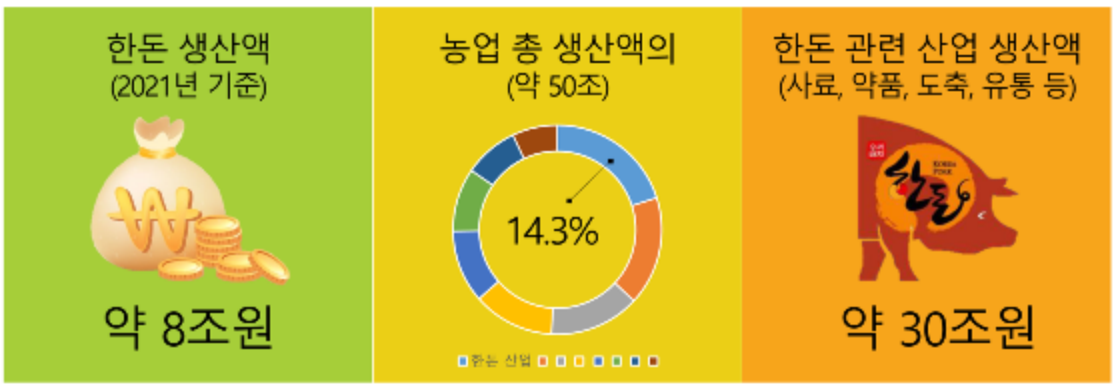
한돈산업 당면 규제와 대응 방안



조 진 현 전무대행
(사)대한한돈협회
(박사,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한돈산업발전협의회

한돈산업 위치



한돈산업발전협의회

사육현황



출처 :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사육두수는 1,100만두 수준 유지
농가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음"

도축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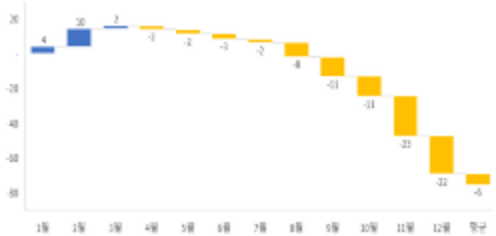


2022년 도축두수는 전국한돈농가전산관리프로그램(한돈팜스, 대한한돈협회 예측치)

"'22년 도축두수 18,302천두
전년 대비 약 68천두 감소 전망"

돼지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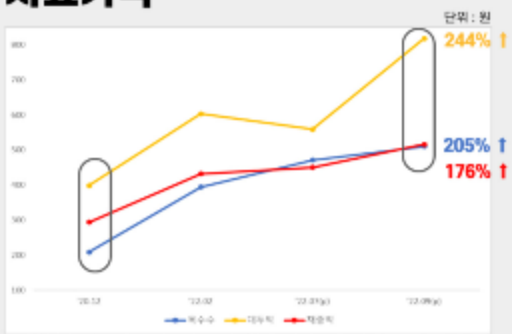
전년동월대비 가격증감율(2021년 比)



2022년 돼지가격 전망 수치는 7개사 예측자료 평균값

"2022년 돼지가격 4,429원 전망
(전년 比 293원/kg 감소)"

사료가격



출처 : (환율) 무리한형 환율자료 (국제곡물가격) KATI 농식품수출정보
2022 7월, 9월 추정가격은 사료업체에 문의한 가격임

"지난해 사료값 151.2원/kg 상승
수입 원료 국내 도착 가격 지속 상승
사료값 추가 상승 불가피"

한돈산업 진단(SWOT)

S 한돈산업 강점 (Strength)
- 국민 선호도 1위 육류 품목의 위상
- 연관산업과 함께 먹거리 핵심산업으로 성장
- 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의 역할
- 청년한돈인 꾸준한 유입으로 젊어지는 한돈
-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농촌경제 살리는 산업

W 한돈산업 약점 (Weakness)
- 낮은 생산성, 고령화
- 높은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인력문제)
- PED 등 소모성 질병
- 한돈 품질, 가격 경쟁력 약화
- 열악한 사육환경, 냄새 문제

O 한돈산업 기회 (Opportunity)
- 신선육에 대한 높은 소비 선호도
- 한돈 안전성, 고품질 단백질 공급원
- 2세 경영으로의 빠른 전환, 선진 기술 도입
- 생산성 향상에 따른 경쟁력 증가의 가능성
- 첨단 기술(ICT, AI) 접목
- 수입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T 한돈산업 위협 요소 (Threat)
-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따른 규제 강화
- 대체육 개발, 채식주의 확산
- 동물복지 도입 등 대외여건 변화
- 수입육의 공격적인 마케팅
- 아생멧돼지 ASF 확산, 구제역 등 확산 우려

산업 규제

생산기반 분야

1.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지원 단가 상향 조정
2. **축사에 대한 소방시설 의무 완화**
3. 각종 축산(친환경) 관련 인증제 통폐합
4. **축산업 발전을 위한 축종별 맞춤형 법체계 마련**
5. 과태료 처분 정책지원 제한 기준 완화
6. 기록관리 업무 간소화
7. **체험목장(6차 산업) 설치 운영을 위한 규제 개선**
8.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 개선
9. 이력제 수집 정보의 사용 제한 강화
10. E-9 체류 자격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기준 개선



생산기반 분야(1)

축산업 발전을 위한 맞춤형 법 체계 마련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관련법령	축산법

가.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축산업은 쌀을 넘어서는 핵심 식량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주요 축종의 생산액이 2~8조에 달하고 있어 축종별로 정책 체계 필요

 ※ 2020년 쌀 생산액 8조4천억원 대비 축산 생산액 약 20조3천억원
 (돼지 7.2, 한육우 6.0, 닭계란 3.7, 우유 2.2조원 등)

- 현재 '축산법'에서 모든 축종에 대해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축종별(한우, 낙농, 양돈, 양계 및 가금류 등) 차이점이 커 맞춤형 정책수립이 요구됨.

 ※ 한우 : 산업보호 중심, 한돈 : 경쟁력 강화, 낙농 : 수급관리 등

 – 또한 기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등도 부득이 축종별 별도 지침을 만드는 등
 공통된 정책 적용의 한계 발생

나. 개선방안

- '축산법'의 체계를 개편하여 축종별 장 또는 절을 신설하여 맞춤형 법률 체계 마련

현행	개편(안)
제1장 총칙 제2장 가축 개량 및 인공수정 등 제3장 축산물의 수급 등 제4장 가축시장과 축산물의 등급화 제5장 축산발전기금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제1장 총칙 제2장 가축 개량 및 인공수정 등 제3장 축산물의 수급 등 제4장 가축시장과 축산물의 등급화 제5장 축산발전기금 **제6장 한·육우** **제7장 양돈** **제8장 낙농** **제9장 가금** **제10장 기타 가축**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

생산기반 분야(2)

: 축사에 대한 소방시설 의무 완화

담당부처	소방방재청	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가. 현황 및 문제점

- 축사의 경우,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동물사육 공간**(특정소방대상물)임에도 사람과 유사한 소방시설 요구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 인·허가 애로사항이 됨.

(현 규제) 축사에 옥내소화전,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유도등 등 의무 적용

- 옥내소화전 : 연면적 3천m^2 이상(특히 개방형 축사 등)
- 비상경보 : 무창층 바닥면적 150m^2 이상
- 자동화재 탐지설비 : 연면적 2,000m^2 이상
-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지표지 : 특정소방대상물 포함

나. 개선방안

- 축사건물(건물 내부에 사람이 주거 또는 상주하는 공간이 없을 경우)에 대해서는 옥내소화전, 비상경보, 자동화재 탐지설비, 유도등 등 설치의무 제외 (소화기, 비상구 표시등 등만 설치)

〈법령(시행령)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시행령 [별표5] 1의 나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공작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3천m^2 이상(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이거나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시행령 [별표5] 1의 나**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공작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3천m^2 이상(지하가 중 터널인 것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축사는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시행령 [별표5] 2의 가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공작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400m^2(지하가 중 터널 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목의 있는 축사는 제외한다**)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m^2(공학) 이상인 것	**시행령 [별표5] 2의 가**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공작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400m^2(지하가 중 터널 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축사는 제외한다**)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m^2(공학) 이상인 것
시행령 [별표5] 2의 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3) (유학)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기숙사 지원만으로 구성되어 외부와 기술가 동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공학)	**시행령 [별표5] 2의 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3) (유학)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축사**,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기숙사 지원만으로 구성되어 외부와 기술가 동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공학)
시행령 [별표5] 3의 다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학)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별표2 제19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로서 가축을 직접 가두어 사육하는 부분**	**시행령 [별표5] 3의 다**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학)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별표2 제19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

생산기반 분야(3)

체험목장 설치·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식약처	관련법령	건축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가. 현황 및 문제점

혐오시설로 여기고 있는 축산의 이미지 제고와 농업 부가가치 및 농가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해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방안 필요

※ 6차 산업화 :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특산품 제조가공(2차 산업) 및 유통·판매, 문화체험·관광 서비스(3차 산업) 등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 현 법률상 **축사**가 설치될 수 있는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에서는 체험목장을 위해 꼭 필요한 **육가공시설 및 전시, 판매시설 설치가 사실상 어렵고,**
- 또한 **육가공시설 및 전시, 판매시설** 설치가 가능한 '도시지역' 등에는 반대로 **축사를 설치하기가 어려움.**
- 또한 모든 육가공시설에 대해서 검사실, 식육가공업 **자동화 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어 일부 완화 및 별도 관리체계 마련 필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개정안〉

현행	개정 의견
[별표1] 용도별 건출물의 종류(제3조의 4 관련) (생략)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생략)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별표1] 용도별 건출물의 종류(제3조의 4 관련) (생략)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생략)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500㎡이하 육가공 시설 및 전시, 판매시설을 갖춘 체험목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개정안〉

[별표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생략) (1) 식육가공업 가)식육가공품은 가공과정을 자동화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며(원료의 배합과정에서 제품의 포장과정까지 필요한 시설에 한하며, **베이컨 · 건조저장육 등 제품의 특성상 자동화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다), 그 밖의 시설기준은 가목에 따른 공통시설기준에 따른다. (나)식육가공품의 가공실은 그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는 온도조절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열처리를 실시하는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생략) (1) 식육가공업 가)식육가공품은 가공과정을 자동화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며(원료의 배합과정에서 제품의 포장과정까지 필요한 시설에 한하며, **베이컨 · 건조저장육 등 제품의 특성상 자동화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500㎡이하 육가공시설 및 전시, 판시설을 갖춘 체험목장의 경우를** 제외한다), 그 밖의 시설기준은 가목에 따른 공통시설기준에 따른다. (나)식육가공품의 가공실은 그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는 온도조절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열처리를 실시하는 장소와 **500㎡이하 육가공시설 및 전시, 판매시설을 갖춘 체험목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 규제

질병 방역분야

1. 방역시설 설치, 운영 미흡 시 농장 사용 중지, 폐쇄 명령 삭제
2. 전실, 내부 울타리, 폐사체 보관시설 의무화 제외
3. 구제역 등 백신 비용 전액 지원
4. ASF, 과도한 이동 제한 완화
5. ASF, 과도한 살처분 및 도태 명령 완화
6. 도 방역심의회 이동 제한 반입 제한 명령 개선
7. 구제역, ASF 등 살처분 보상금, 경영손실 지원 강화
8. 과도한 방역 관련 과태료 기준 완화
9. 의무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 보상 지원



질병 방역분야(1)

▫ 전실, 내부울타리, 폐사체 보관시설 의무화 제외

담당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가. 현황 및 문제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6.30일 공포)에 따라 전국 양돈농가는 8대 방역시설(전실, 내부울타리 등)을 의무 설치해야 함.

나. 개선방안

● 3가지 시설(내부울타리, 전실, 폐사체 보관시설)은 의무화 제외 및 권장 사항 조치 필요

- 내부 울타리 : 내부 울타리를 설치할 경우 양돈은 돈사 간 이동이 잦으므로 농장 업무 시 불편 초래, 실제 운영되기 어려움.
- 전실 : 농장 입구가 협소하거나 스톨 등으로 인해 전실 설치 불가한 농가가 있으며, 설치하더라도 돼지는 돈사 간 이동하므로 방역적 효과가 낮거나 시설 자체가 무의미한 경우가 많음.
 ⇒ 방역적 효과가 높은 외부 울타리, 차량 소독시설 등 차단방역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음.
- 폐사체 보관시설 : 폐사체는 농장에 보관하기보다는 신속 처리가 중요함. 고온멸균 처리되는 렌더링 시설 등 자체 폐사체 처리기 이용도 허용 필요.

질병 방역분야(2)(3)

ASF 과도한 살처분 및 도태명령 완화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관련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가. 현황 및 문제점

2019년 9월 국내 첫 ASF 발생 시 경기 북부(파주, 연천, 김포, 강화) 및 강원 일부 지역 시군 광범위한 살처분 도태명령(261농가, 45만두)으로 막대한 재산손실을 입었으며, 재입식까지 공백 기간(약 2년간)동안 수입이 없었음.

- 정부 SOP(긴급행동요령)에는 500m 이내만 살처분토록 하고 있음에도 과대 살처분
- 정부 정책으로 인한 살처분 피해 최소화, 농가 생존권 보존 필요

나. 개선방안

- **ASF 발생 시 살처분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 필요(법 및 고시 제정)**
 -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평가지표 발굴 및 적용 필요(농장 위험도 평가)
 - 최대한 발생농장만 살처분을 추진하고, 500m 이내 역학 농가는 세부 평가지표를 통해 위험성 높은 곳만 살처분 검토

살처분 보상금, 경영손실 지원 강화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관련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가. 현황 및 문제점

가축전염병 감염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 및 오염 물건에 대한 보상금은 살처분 당시의 시세로 지급하되, 방역 규정을 위반한 농가 등은 관련 법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11조,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고시)
- 불법 외국인 노동자, 방역 및 소독요령 위반 등

또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4 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 명령 시에는 경영손실비 100%를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미적용(이동제한 명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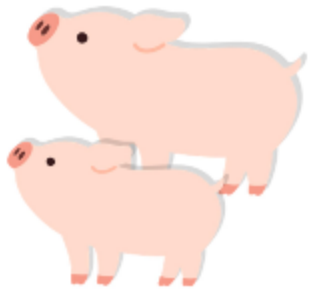
나. 개선방안

현실성 있는 살처분보상금, 경영안정자금을 통해 농가들의 정부 정책 참여율 제고 및 농가경영 안전성 제고, 농가 개인의 재산권 보호

산업 규제

분뇨
환경분야

1. 과도한 가축사육제한 철폐
2. 공동자원화·액비저장조 시설지원 단가 현실화
3. 액비 운송 및 살포 차량 면세 유류 적용
4. 임야(과수원)에 대한 액비 살포 허용
5. 가축분뇨법 농식품부로 일원화
6. 냄새 규제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
7. 과도한 액비 살포량 규제 완화(비료관리법)
8. 타 재활용 신고 필지 액비 살포 허용
9.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업무 범위 명확화
10. 농장 간 가축분뇨 이동 처리 허용
11. 부숙도 처벌기준 일원화(벌칙 과태료 조항)
12. 방목 시 가축분뇨 수거 의무 완화
13. 시비처방서 액비 살포량 현실화
1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과태료 양벌규정 완화
15. 실경작자에 의한 농지확보 증빙 허용
16. 농지 내 액비저장조 설치 규정 완화
17. 축산업자의 퇴비 판매 기준 완화
18.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개선
19. 바이오가스 촉진법 관련 대응
20. 탄소중립을 위한 정화방류 확대 방안 마련



분뇨 환경분야(1)

과도한 가축사육제한 철폐

담당부처	환경부	관련법령	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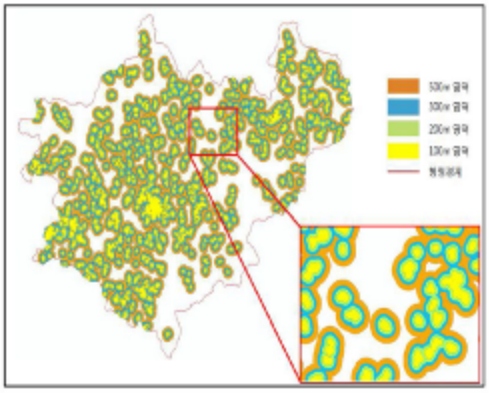
가. 현황 및 문제점

환경부 권고안에 따른 과도한 가축사육제한으로 국내 축산업 위축
(민가 2~5가구로부터 1~2km)

가. 현황 및 문제점

1) 권고안이 아닌 가축분뇨법 제8조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으로 규제 방식과 최대범위 설정

2) 가축분뇨법 8조 1항 제1호의 **'주거밀집지역'**의 정의 명확화



〈예시 : 안성시 : 민가 5가구 기준 제한〉



〈예시 : 가평군
: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만 제한〉

분뇨 환경분야(2)

: 가축분뇨 이용촉진 법령 신설

담당부처	환경부, 농식품부	관련법령	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가. 현황 및 문제점

2007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되었으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환경부가 법을 관리하고 농식품부는 형식적인 행정규칙만 관리**하고 있는 형태임.

-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를 촉진해야 하는 농식품부에서는 관련 법령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용촉진에 한계
- 반면, 환경부는 가축분뇨 이용보다는 규제, 단속, 사육제한 중심으로 계속 법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당초 취지	현재 관리형태 (소관부처)
'관리'(환경부)와 '이용촉진'(농식품부)을 하나의 법에 포함시켜 서로 협력체계 구축	· 가축분뇨법 (환경부) · 가축분뇨법 시행령(환경부)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환경부) ·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농식품부)

나. 개선방안

가축분뇨 관리업무(환경부)와 구분하여 이용촉진(환경부) 법령 신설
- (가칭) **'가축분뇨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분뇨 환경분야(3)

과도한 액비살포량 규제 완화(비료관리법)

담당부처	농식품부	관련법령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가. 현황 및 문제점

저품질 남은 음식물 퇴비 등의 남용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비료의 시비한도량**을 정하도록 이원택 의원이 비료관리법 개정법률안 발의(2021. 7. 22)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시행규칙 개정[별표4] 과정에서 **비료의 종류(액비, 화학비료 포함)와 상관없이 ha당 37.5톤으로 한도량 제한**, 액비는 최종 시비처방서 처방량으로 시행됨(2022. 7).

나. 개선방안

시비처방서는 작물의 최소 요구량으로써 최대 살포량이 될 수 없음.
따라서 비료의 종류별로 질소 함유량에 따라 별도 규정 마련 필요

구분	화학비료(요소)	가축분퇴비	가축분뇨 액비
질소함유량	45% 이상	1~2%	0.1~0.2%
1kg당 질소량	450g 이상	10g~20g	1g~2g



분뇨 환경분야(4)

▫ 타 재활용 신고 필지 액비 살포 허용

담당부처	환경부	관련법령	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 법률

가. 현황 및 문제점

총 207개 액비유통센타 중 62개 사업체(30%)가 운송/살포 중심으로써 재활용 신고가 불가능

-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적용 후 가축분뇨법 제27조 위반 발생(재활용 신고된 필지에만 살포)

나. 개선방안

<법적 기준>



<현장 상황>



<개선방안>





분뇨 환경분야(5)

탄소중립을 위한 정화방류 등 처리 다각화

담당부처	환경부	관련법령	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 법률

가축분뇨 탄소 배출량(494만톤 CO2eq)를
줄이기 위해 정화방류 등 가축분뇨 처리 방식 다각화 필요

탄소저감 시설 확대

바이오가스 (80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설비>

- **(메탄 포집)** 에너지화를 통해 온실가스 발생량의 46.2% 감축 — 0.62 백만톤
 - * 100톤/일 처리기준 공동에너지화 시설 처리시 771톤 CO2-eq 저감
 - * 미처리 시 온실가스 1,670톤 CO2-eq 발생 (김은대학교, 2013)
- **(전력 생산)** 바이오가스를 통한 전력생산으로 화석연료 대체 — 1.60 백만톤
 - * 100톤/일 처리기준 공동에너지화 시설 당 연간 2,000톤 CO2-eq 감축 효과
 (기당 1,000~3,000톤 평균 적용(연 85만kw 생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평가 기준)

기타 (고체연료 50개소 등)

- **(고체 연료화)** 가축분 고형분 고체 연료화로 화석연료 대체 효과 (연간 0.4백만톤/50개소)
 - * 분연탄 연료 대체효과 1.74톤 C/T) 적용 (2020 국가 온실가스인벤토리 보고서, 한돈협회 축산분야 탄소저감 대책(용역 중))
- **(정화 방류) 가축분뇨 정화처리는 퇴·액비화 대비 온실가스 30% 이상 감축 가능** (연간 0.012백만톤)
 - * 발절 과정을 통해 온실가스(아산화질소) 발생량 중 일부를 공기 중 질소(N2)로 배출, 암든 액비화 비중 중 50% 정화방류 전환 시)

정화방류 확대 등을 통해 2.22백만톤 감축 가능

한돈산업발전협의회

미래 한돈산업 목표

